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6. 5.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35백만원 ○ 과징금 42백만원
임 원	○ 주의 1명
직 원	○ 면직 1명 ○ 견책 2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직무 관련 금품수수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에 의하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청운신용협동조합(이하 '청운신협') 차장 甲은 청운신협의 A사에 대한 대출(대출일 2020.3.4., 대출금 59억 50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2019.4.2. 최초 대출 취급 이후 약 3~4개월 간격으로 동일 부동산을 담보로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증액대출을 취급(2019.8.23., 2019.12.24. 및 2020.3.4.)하는 과정에서 B감정평가법인(총 4회 대출 중 3회 감정평가)이 선정되도록 관여하는 한편, 대출조건 등에 대한 대출 상담과정에서 乙(A사 부대표)에게 공제료 29,566,520원의 신협중앙회 공제상품 가입을 요구하였고, 공제모집 수당으로 합계 12,127,5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중소기업인 C사에 대한 대출(대출일 2021.5.21. 및 2021.6.3., 대출금 45억원) 취급과 관련하여,

C사가 대출 취급 시 최근 결산일인 2020년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으로 부실징후가 있었고, 담보물인 루지시설에는 126억 40백만원 상당의 선순위 담보권이 기설정되어 있어 환가성 낮음에도 동사에 대해 해당 대출을 취급하면서 乙(C사 공동대표)에게 공제료 43,347,410원의 신협중앙회 공제상품 가입을 요구하였고, 공제모집 수당으로 13,083,723원을 교부받았다.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2) 구속성 공제상품 계약 체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청운신협은 2021.5.21. 중소기업인 C사에게 45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2021.6.4. 동 기업의 대표자 乙을 신협중앙회 공제상품인 ㉠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 관련규정 >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등

(3)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 개설 및 수표 현금화시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청운신협은 2020.3.6.~2023.2.28.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공제상품청약자 丙 등 11명들의 상품가입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명의자가 휴대전화로 전송한 주민등록증 사진만을 확인하였을 뿐 추가로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2020.3.19.~2021.11.11.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A사 및 C사가 발행한 수표 7매, 총 50백만원의 수표 제시자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 현금화하였다.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나. 주의사항

(1)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소유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청운신협은 2018.12.18. 및 2020.1.20. 연수원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제주도 소재 단독주택 2채*를 연수원 명목으로 각각 5억 30백만원 및 6억 8백만원에 매입하였고,

* 1차 매입(D 주택), 2차 매입(E 주택)

매입일 이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총 690회 이용 중 연수목적 이용은 각각 1회*에 불과하고, 조합원·직원·타조합 직원 및 유관기관 개인의 숙박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 * 1) D 주택 : 감사실 워크숍 개최(2019.11.27.~2019.11.30.)
- 2) E 주택 : 사회공헌팀 출장(2022.3.4.~2022.3.5.)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 등